====== 【 기술보호와 법 】 =======

<<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이해 >>

I. 영업비밀보호법의 이해

1. 영업비밀의 의의

(1) 영업비밀의 개념

- '비밀'이라는 단어는 민법이나 형법 등 여러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통일적으로 규정된 정의는 없다. '우주의 비밀'을 절대적 비밀이라고 한다면 법률상 비밀은 상대적 비밀에 속 한다고 할 수 있다.
- 영업비밀도 법률상 비밀이기 때문에 상대적 의미의 비밀이다. 몇몇 사람이 정보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라도 이를 알고 있는 구성원 전원이 비밀유지 서약을 한 경우는 정보를 영업비밀로 공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영업비밀에 관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영업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2) 영업비밀 보호 목적

-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TRIPs 협정에 따라 1992년 12월 15일 도입된 제도로써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서 모두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3) 영업비밀의 재산적 가치

- 유럽지식재산청에서는 유럽연합에서 조사한 Community Innovation Survey 2012 발표 데이터, 즉 유럽 역내 20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을 보호하고 있는 수단을 조사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영업비밀이 응답기업의 52.3%에서 혁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허와 비교해도 더 높은 비율로 이용되고 있다는 결과를 근거로 영업비밀이 기업의 "가장 가치있는 자산 중 하나"라고 결론 짓고 있다.

(4) 영업비밀 유출 피해 규모

- 2016년 특허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업비밀 보유기업의 14%가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하였고 평균 피해금액은 21억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 기술보호와 법 】 =======

-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보조금으로 2011년 설립된 NGO단체인 "CREATe.org"와 다국적 회계 컨설팅 기업인 "PwC" 공동연구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공업국의 영업비밀 도용에 의한 피해 규모는 GDP 대비 1~3%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를 우리나라의 2020년 GDP에 적용해 보면 연간 최소 19조원에서 최대 58조원 규모로 추산할 수 있다.

(5) 영업비밀제도 보호 연혁

- 1991년 12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보호제도 도입
- 1998년 12월 반도체 국외유출사건을 계기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

(6) 영업비밀의 유형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매우 다양하다. 영업비밀은 기술상의 정보와 영업상의 정보로 나누고 생산방법과 판매방법을 각각 그 예로 제시하고 있다.
- 기술상 정보는 특허능력이 있는 반면 영업상 정보는 특허능력이 없다고 한다.

구분	종류	예시
기술정보	제품·시설 설계도	공장 설계도, 기계장치 배치도, 생산라인 설계도, 공정 설계도
	프로그램 소스코드	
	제품 생산방법	가공, 조립, 제조방법
	원료 배합 정보	원료 배합 배율, 배합 순서, 시차
	연구개발 정보	연구개발 과정, 결과 보고서, 실험 데이터
	시험 데이터	의약품의 효능, 시제품 성능, 기계장치 시운전
경영정보	고객명부	
	주요계획	신규 투자계획, 신제품 개발 계획, 마케팅 전략
	관리정보	거래처 정보, 원가분석, 마진율, 입찰 가격, 경영분석
	매뉴얼	판매, 홍보, 가격산정, 교육 등 관련

2. 영업비밀의 요건

- (1) 비공지성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함.
- 공개된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 상태이며,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 경제적 가치가 있고 그 보유자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여도 누구나 쉽게 접근

======= 【기술보호와 법】======== 하여알수있는 정보라면그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며그 이용이 타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 불특정 다수가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 -->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도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인정된다.

<사례> 역설계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사례> 조합방법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

공연히 알려진 정보의 조합일지라도 그 조합방법이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아서 한 쪽 업체의 정보가 다른 경쟁사의 정보에 대하여 우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 ① 고액소득자, 로터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의사회 등의 명부에서 수집한 인명, 주소, 전화 번호(공연히 알려진 정보의 조합)일지라도 이를 200만명에 대한통신판매 결과를 토대로 추출, 정리(조합방법이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음)한 3만명의 고객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 ② 200여명의 고객을 정리한 고객명부도 판매비용을 절약하여 영업의 효율화를 달성하는 가치(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비공지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다.

<사례> 국외 공지

음료나 맥주의 용기에 내용물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테이프나 열감지잉크 등의 온도감응수단을 부착하는 아이디어는 국내에서 사용된 바는 없다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 에 있었으므로, 온도테이프를 부착한 맥주 용기에 관한 아이디어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지법 96가합7170 판결).

- (2) 경제적 유용성 : 기술상·경영상 가치가 있어야 함.
- Q. 실패한 데이터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상대 경쟁자에 대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할 경우 당해 정보는 경제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실패한 실험 데이터라 할지라도 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반면, 종교상의 교의를 담은 문서는 순전히 영적인가치와 결부되어 영업비밀로서의 경제적 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기술보호와 법 】 =======

-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되는 '영업비밀'은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느 기업의 탈세사실이나 공해물질 유포사실 등 반사회적 정보(예. 뇌물정보, 스캔들)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없어 영업비밀로 보호되지 않는다.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 < 독립된 경제적 가치 판단 기준 >
- 1)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거나 판매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혹은 경쟁자에 대하여 자신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때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
- 2)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때
- 정보의 취득사용에 있어 대가나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혹은 정보의 독자적인 개발을 위해 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할 때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

<사례>

소극적인 정보라도 사업활동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예를들어 장기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 연구나 실험결과를 통하여 어떤 공정이 유용하지 않다는 정보 역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그 실험을 생략하여 연구개발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2000가합54005 판결).

- A. 따라서 실패한 데이터의 경우도 경제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 (3) 비밀관리성 : 비밀로 관리되어야 함.
-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고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 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 상당한 노력 :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표시하거나 고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나 접 근 방법을 제한,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
- 영업비밀은 당해 기업의 종업원이나 외부의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비밀로 관리되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영업비밀은 보유자가 비밀에 접근하거나 접근하려는 자에 대하여 당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어야 하며, 그 특정된 비밀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야 하고, 접근자에게는 부당한 사용이나 공개를 금하는 수비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
-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노력의 정도는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창으로 침입한 자에 대하여는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는 정도만으로도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서류를 자유로이 열람하는 사내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그 정도로는 부족하고, 서류비밀표시를 붙여두던지, 라커에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다.

====== 【 기술보호와 법 】 =======

-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밀 관리를 위한 노력이 충분하였는지 판단할 때에 기업의 규모를 고려한다. 즉 기업 규모에 비추어 과도한 정도의 비밀관리 노력을 요구하지 않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비밀관리 노력조차 취하지 않았다면 비밀관리 노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영업비밀이 알려지지 않게(비공지성) 비밀로 관리되고 있고(비밀관리성), 영업비밀 덕분에 회사 경쟁력이 올라가게 된다(경제적 유용성).
- 비밀일기는 인정될까?
- 위 세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 일기는 경제적 관점에서 의미가 없으므로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

3. 특허와 영업비밀 중 어느 것으로 보호하는 것이 유리한가?

(1) 특허

- 보호대상 : 발명->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 보호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 보호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배타적 권리

(2) 영업비밀

- 보호대상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보호요건 : 비밀성, 독립적 경제적 가치, 비밀로 관리
- 보호기간 : 비밀로 유지되고 관리되는 동안

(3) 특허로 보호될 때의 장점

- 특허권 존속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침해자에 대해 민사적·형 사적으로 강력한 구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4) 영업비밀로 보호할 때의 장점

- 비밀로 유지하는 한 기간의 제한없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기술적 정보나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관리비결 등 경영정보 및 영업상의 아이디어 등도 보호받을 수 있다.

====== 【 기술보호와 법 】 =======

4. 다른 유사개념과 비교

(1) 기업비밀

- 영업비밀과 기업비밀을 구분짓는 경우, 기업비밀은 넓은 의미로는 산업비밀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영업비밀을 뜻한다.

- 영업비밀은 일종의 기업비밀이며, 기업비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보이다. 하지만,
-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보호법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는 정보인데 반하여 기업비밀은 요건의 충족과는 상관없이 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산업기술

-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 영업비밀보호법은 기술 뿐만 아니라 경영상 정보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성립 요건으로 하는데 반하여, 산업기술보호법 상의 산업기 술은 이러한 요건을 두지 않는다.

(3) 국가핵심기술

-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이라는 개념 외에 '국가핵심기술'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국 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 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 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을 뜻 한다.

(4) 방위산업기술

-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 위사업청장이「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



====== 【 기술보호와 법 】 =======

5.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특성

- (1)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상태를 보호
- 특허법, 실용신안법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이에 반해 영업비밀보호법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관리하는 경우에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법과는 다르다.

(2) 독점·배타권이 없음

- 영업비밀보호법은 특허권처럼 정보에 대한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상태'를 보호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영업비밀을 보호한다.
- 그러므로 영업비밀로 유지되는 동안에는 계속 보호가 가능하며, 독점·배타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동일한 영업비밀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사용하는 경우 본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